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 비교연구*

신민지¹⁾ 이화도²⁾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논의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의 비교는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 대상 아동, 이용시간, 이용절차, 보육료 결정 및 지원정책의 5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가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 선정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을 정할 때 부모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시간 설정 체계가 재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맞춤형 보육 제도 이용절차에 있어 부모의 인권과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맞춤형 보육료 결정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공동 책임에 기반을 둔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주제어: 일본과 한국, 보육제도, 맞춤형 보육, 인정어린이원, 보육시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한국의 맞벌이 가구는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의 부담은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데,

* 본 논문은 '신민지(2017).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제도 비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2)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16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¹⁾으로, 이미 초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OECD국가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증가시키고, 여성에게 보다 공평한 기준으로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세계 각국에서 공익으로 여겨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OECD, 2006).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육아 지원 요구, 정부차원의 필요성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 1일, 이전의 무상보육 체계를 보완·내실화한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였다.

맞춤형 보육 제도란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유무나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종일반'(하루 12시간) 외에 '맞춤반'(하루 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으로 나누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1일에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와 보육기관의 입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판과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육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2016년 맞춤형 보육 제도의 시행 후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2015년 대비 6% 인상 되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정갑윤, 2016),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표준보육비용은 기본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비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맞춤형 보육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기관에서 종일반 편성을 위해 허위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고 있어 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7. 10.). 실제로 지난 5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얻은 5만23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2만1330명이 허위 자격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자격 변경 및 보육료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허위 재직증명서로 종일반 자격을 받았다가 전환 조치 된 인원이 40%가 넘었다는 이야기다(경향신문, 2017. 9. 27.).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맞춤형 보육 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맞벌이 부모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52분으로

1) 국가통계포털(n.d.).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http://kosis.kr>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함.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전보다 14분 늘어나는데 그침을 알 수 있다(MBC NEWS, 2017. 7. 4.).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2016년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정착시킨 일본의 보육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5가지 비교준거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의 방향정립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인정어린이원(강란혜, 2008; 김혜진·손유진·전윤숙, 2015; 노성향, 2014; 박은희, 2015; 오미희, 2014; 이규림, 2017; 이성한, 2014; 장경희, 2014; 하경표, 2009; 한정환, 2011; 홍금자·정효정·이혜영, 2015)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연구(김효진, 2017; 박사빈, 2016; 오경미, 2017; 이민희, 2017; 임효미, 2017; 장진아, 2017)는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와 함께 시행된 인정어린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저출산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국형 맞춤형 보육 제도의 방향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가 2016년 9,671달러로 축소되어, 일본의 인구가 한국 인구의 2.4배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이 유사해졌다고 볼 수 있어(KBS NEWS, 2017. 4. 6.)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의 정착을 위해 두 나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일본의 맞춤형 보육 제도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은 2015년 4월부터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와

2) 일본의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인정어린이원 이외에도 보육소가 있으나, 보육소의 경우, 그 대상 아동이 부모가 취업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경우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와는 구별된다.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는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유무나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종일반'(하루 12시간)과 '맞춤반'(하루 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으로 나누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함께 시행된 제도로,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유무나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각각 11시간, 8시간, 4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나 돌봄 필요사유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8~11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자녀의 경우,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보육서비스를 하루 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주로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인정어린이원 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정어린이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인 인정어린이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본은 1951년부터 시작된 유·보이원화 정책에 따라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루 표준 4시간의 교육을 시행하는 유치원과 보호자의 취업 등의 사정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루 원칙 8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소로 이원화되어 그 목적과 역할을 달리하며 각각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2~3만 명의 보육소 대기아동이 생기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수가 10년 동안 10만 명이 감소하여 유치원 원아가 감소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강란혜, 2008).³⁾ 또한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 불안이 커짐에 따라,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요구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노성향, 2014; 하경표, 2009).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보육의 필요성이 다양화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은 유연한 대응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006년에 제정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유치원과 보육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기관인 인정어린이원 제도이다. 그러나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시행 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 인정어린이원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2015년 4월부터 <아동·육아지원 신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정어린이원이 새롭게 재정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 다시 인정어린이원⁴⁾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면서 재

3) 이와 함께 유치원을 활용하여 보육대기아동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서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보육소화'가 시작된다. 반면 보육소에서는 '교육'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소의 유치원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현정환, 2011).

4)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경우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의 4가지로 구분된다. '유보연계형'이란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한 새로운 유형으로, 교육의 기능과 보육의 기능을 모두 갖추어 인정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일기관을 말한다. '유치원형'은 기존의 인가 유치원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2015년 이후부터 인정어린이원의 인가기준이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에 비하여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유보 연계형이 아닌 유치원형이나 보육소형, 지방재량형의 경우 여전히 2006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기관에 따른 보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형과 보육소형의 경우, 어느 한쪽의 허가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유치원형의 경우 보육이, 보육소형의 교육부분이 미흡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재량형은 어느 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이규림, 2017).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최근 인정어린이원의 질적 수준의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는 설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진 문헌연구이다. 두 나라의 맞춤형 보육 제도의 비교분석의 준거는 Gilbert와 Terrell(원석조, 2010, 재인용)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에 근거하여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 대상 아동, 이용시간, 이용절차, 보육료 결정 및 지원정책의 5가지 준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보육정책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과 비교분석의 준거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첫째, 일본의 인정어린이원과 관련된 자료는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다른 행정기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내각부의 사이트 <www.cao.go.jp>에서 내각부 정책 중 아동·육아지원에서 살펴보았다.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의 제도 개요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2016년 4월 개정판인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 なるほど BOOK」(内閣府, 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 2016)과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内閣府 子ども・子育て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보육의 기능을 갖추어 인정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보육소형'은 기존의 인가 보육소가 교육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유치원의 기능을 수행하여 인정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지방재량형'은 유치원·보육소의 인가를 받지 않는 않지만, 지역의 교육·보육기관이 인정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て本部, 2017)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황은 「認定こども園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2016. 4. 1.)를 참고하였다.

둘째,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www.mohw.go.kr>에서 보육 정책 중 맞춤형 보육 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보도 자료 및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보건복지부 발간자료, 2017. 12. 28.)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보육료와 관련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현황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kosis.kr>에서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참고하였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자료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학위논문, 학술논문, 세미나 자료는 국회도서관, RISS, DBPIA, e-article, KISS에서 '일본', '한국'과 '영유아', '인정어린이원', '맞춤형 보육', '보육제도' 등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찾아보았다. 일본과 관련된 자료는 인정어린이원이 시행되려 한 2005년도 이후의 자료들을, 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자료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2. 비교분석의 준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로, 비교분석의 준거는 Gilbert와 Terrell(원석조, 2010, 재인용)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 대상 아동, 이용시간, 이용절차, 보육료 결정 및 지원정책의 5가지⁵⁾이다.

5) Gilbert와 Terrell이 제시한(원석조, 2010, 재인용) 사회복지정책분석의 4가지 구성요소는 사회적 배분, 사회적 공급, 전달체계, 재정으로, '사회적 배분'은 누가,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사회적 공급'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재정'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해당한다.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재구성하면, '사회적 배분'은 맞춤형 보육 제도의 대상 아동, '사회적 공급'은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보육 제도 이용시간에 해당된다. '전달체계'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에 해당되며, '재정'은 맞춤형 보육 제도의 보육료 결정 및 지원정책에 해당된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을 추가하여 5개의 비교준거를 재구성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두 나라 모두 사립기관의 비율이 공립기관보다 높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의 설립주체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2016년 기준, 공립기관은 17.5%, 사립기관은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국공립기관은 7.0%, 사립기관은 93%를 차지하고 있어 두 나라 모두 사립기관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보육실시기관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 모두 보육기관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1> 일본과 한국의 기관 설립주체별 현황

단위: 개

설립주체	일본 (인정어린이원)		한국 (어린이집)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공립	554 (19.5)	700 (17.5)	2,629 (6.2)	2,859 (7.0)
사립	2,282 (80.5)	3,301 (82.5)	39,888 (93.8)	38,225 (93)
총계	2,836 (100.0)	4,001 (100.0)	42,517 (100.0)	41,084 (100.0)

주: () 안은 백분율을 나타냄.

자료: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16. 4. 1.) 認定子ども園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4월에 인출함.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의 전체 수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15년 2,836개에서 2016년 4,001개로 전년도 대비 4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2016. 4.1.). 이러한 현상은 일본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정어린이원의 설립기준을 하향화하고, 보육기관의 경우, 인가 외의 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가규제도 완화하였지만(하경표, 2009; 한정환, 2011), 정부지원은 오히려 축소시킴으로써 인정어린이원의 수는

9년 동안(2006년~2015년) 2,836개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였다(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2016.4.1.). 그러나 2015년 4월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인정어린이원의 인가기준이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지사가 인가주체가 되어, 대도시(지정도시·중심 핵심도시)에 권한을 이양하되 지정도시, 핵심도시가 인가를 하는 경우, 시장은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도록 상향되었다. 또한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고, 설립기준을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에 대해 높은 수준을 따르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허가기준을 상향하고, 학교 및 아동복지기관으로서의 법적위치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정어린이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증가시킨 결과, 1년 만에 인정어린이원의 수는 4,001개로, 1165개가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1.1% 증가율을 보였다(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2016.4.1.). 또한 인정어린이원 교사의 자격기준도 '유치원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교사를 원칙으로, 시행(2015년 4월 이후)부터 5년간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어 교사의 질도 높아지게 됨으로써 인정어린이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기본보조금 도입과 환경개선 용자 사업 등의 지원 확대로 사립보육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공립보육기관은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새싹플랜」의 국공립기관 확충 계획을 시작으로 2005년 비약적이거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2009~2012」를 통해 공립기관 확충보다는 사립보육기관의 공립 수준으로의 질 향상과 취약지역 중심의 공립보육기관 확충, 공립보육기관 대기자 수 감소로 보육정책이 선회하면서 공립보육기관의 증가율이 주춤하게 되면서 사립기관의 비율이 공립기관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양미선, 2012). 전체 보육기관의 수는 2015년 42,517에서 2016년 41,084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다.⁶⁾ 이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동의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보육기관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일본과 한국의 사립기관 설립주체별 현황비교

설립주체	일본 (인정어린이원)		설립주체	한국 (어린이집)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사회복지법인	919 (40.3)	1,580 (47.9)	사회복지법인	1,414 (3.5)	1,402 (3.7)

6) 국가통계포털(n.d.).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http://kosis.kr>에서 2017년 4월 13일 인출함.

설립주체	일본 (인정어린이원)		설립주체	한국 (어린이집)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학교법인	1,270 (55.7)	1,609 (48.7)	법인·단체 등	834 (2.1)	804 (2.1)
종교법인	15 (0.6)	18 (0.6)	민간	14,626 (36.7)	14,316 (37.5)
영리법인	41 (1.8)	50 (1.5)	가정	22,074 (55.3)	20,598 (53.9)
기타법인	17 (0.7)	23 (0.7)	부모협동	155 (0.4)	157 (0.4)
개인	20 (0.9)	21 (0.6)	직장	785 (2.0)	948 (2.4)
총계	2,282 (100.0)	3,301 (100.0)	총계	39,888 (100.0)	38,225 (100.0)

주: () 안은 백분율을 나타냄.

자료: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2016.4.1. 認定こども園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에서 2017년 4월 인출함.

사립기관의 설립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듯이, 일본의 경우, 주로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수가 2016년 기준, 전체 사립기관의 96.6%를 차지하고 있어 비영리 공익 법인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법인이나 영리법인, 기타법인(NPO 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개인 등으로 이루어진 기관의 비율은 낮다. 반면 한국의 경우, 주로 민간이나 가정기관이 2016년 기준, 91.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 등의 경우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동복지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기관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의 신설, 수리, 개조, 확장 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4분의 3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 인정어린이원이 시행되면서 이 법률 조항에 학교법인을 추가하여 새로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학교법인이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관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인정어린이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사립기관 중,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민간기관과 가정기관은 2005년 기본보조금 도입과 민간기관의 환경개선

용자 사업 등의 지원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선, 2012). 그러나 보육기관 수의 증감은 설립주체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16년 국공립기관은 8.7%, 부모협동은 1.3%, 직장은 20.8%로 각각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국공립기관의 경우, 제 3차 중장기 보육계획(2018~2022)의 지속적인 국공립기관의 확충 사업의 진행으로 국공립기관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기관의 경우, 직장기관 사업장 설치의무 부과 및 직접적인 설치 지원과 이행 강제금 부과 도입으로 2015년 53%에서 2016년 82%의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기관이나 직장보육기관은 증가하고 민간보육기관이나 가정보육기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맞춤형 보육 제도의 대상 아동의 연령에 있어서는 두 나라간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두 나라 모두 부모의 취업유무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과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대상 아동을 설정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일본과 한국의 대상 아동 선정기준 비교

구분	일본 (인정어린이원)	한국 (어린이집)
① 보육의 필요성	• 취업 • 임신, 출산 • 보호자의 질병, 장애 • 동거 또는 장기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친족의 상시 돌봄, 간호 • 형제자매의 소아 만성 질환에 따른 간호 • 재해복구 • 구직활동(창업 준비 포함) • 취학(직업학교 등의 직업 훈련 포함) • 학대나 방임의 우려가 있을 경우 • 육아휴직 시 지금까지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계속 이용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한 상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인정한 경우	• 취업 • 임신 및 산후관리 • 장애 • 입원·간병 • 구직 및 취업준비 • 학업 • 다자녀/육아부담 • 한 부모/조손가족 • 장기부재 •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② 우선	입소정원이 초과하거나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특수한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 선정	

구분	일본 (인정어린이원)			한국 (어린이집)	
순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			때부터 적용	
③ 아동 연령	만 3~5세	1호 인정	교육	만 0~2세	종일반 교육, 보육
		2호 인정	보육, 교육		
	만 0~2세	3호 인정	보육		맞춤형 교육, 보육

자료: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17).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 pp. 7-8, 40.

보건복지부(n.d.). 맞춤형 보육.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5&PAGE=5&topTitle=맞춤형 보육에서 2018년 5월 27일 인출함.

첫째, ‘보육의 필요성’의 경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한국 모두 취업, 임신 및 출산, 장애유무, 입원 및 간호, 구직, 학업 등으로 유사하다. 특히 두 나라 모두 맞춤형 보육서비스 대상 아동 선정기준으로, ‘부모의 취업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취업 유형은 풀타임, 파트타임, 야간 등 기본적으로 모든 취업에 지원하지만(일시 보육에 대응 가능한 단시간 근로는 제외), 부모가 풀타임 근로여야 기관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⁷⁾ 그 외에도 <표 3>에서 제시된 사유에 해당되어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맞춤형 보육의 대상 아동으로 선정되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한국의 경우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주요 선정기준으로 부모의 취업유무가 가장 중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취지가 맞벌이 가구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일본과 한국 모두 맞벌이 가정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동시에 육아의 부담도 덜어주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인구 비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의 입소 ‘우선순위’의 경우, 일본과 한국 모두 생활보호세대, 한 부모 가정, 장애 등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입소정원이 초과하였을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 선정 초기부터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아동을 선정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입소정원이 초과하거나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특수한

7) 보건복지부(n.d.). 해외사례로 본 맞춤형 보육. <http://www.mohw.go.kr/react/policy/popup/childcare06.html>에서 2017년 2월 3일 인출함.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춤형 보육기관의 입소 우선순위는 <표 3>에서 제시한 보육의 필요성과 우선이용 필요성을 점수로 환산하여 판정한다. 보육의 필요성은 최고 40점(주 40시간 이상 근로 20점, 구직 활동 7~16점, 출산 12점, 질병 10~20점 등)으로 부모 각각의 이용조정기준 점수의 합산이며, 우선이용 필요성은 조정기준을 통해 점수조정(-12~+6점)을 한다. 한국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 아동 선정 때부터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우선순위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3,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순위의 경우 항목 당 100점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및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가구면서 3자녀 이상 가구이면 추가 300점을 부여한다. 2순위는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한다.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 합산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입소신청과 동시에, 자격 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로 공무원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면담을 통하여 보육이 필요한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2008년부터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입소 대기 인원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수기로만 관리되어 대기 인원의 파악이나,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대로 입소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2013년 입소대기시스템이 개발되어 부모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기 현황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국제신문, 2013. 10. 20.).

셋째,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의 경우, 일본은 만 0~5세인 반면, 한국은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일본은 보육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 기관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자녀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보육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다만 보육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 이용 시간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만 0~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소가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되면서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 연령이 만 0~5세로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육의 필요성 사유에 따라 1호 인

정, 2호 인정, 3호 인정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⁸⁾ 한국의 경우,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며, <표 3>에서 제시한 보육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영아의 경우, ‘종일반’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을 받게 되며, 해당되지 않는 영아의 경우, ‘맞춤반’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는 만 3세 미만 영아의 주당 평균 보육기관 이용 시간이 OECD의 평균보다 8시간이나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영아가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기관에서 사회적,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화롭게 구성하고자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기관 이용 적정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맞춤형 보육 제도의 이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표 3>에서 제시한 보육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 이용시간이 각각 11시간, 12시간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기관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두 나라간 차이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후, 각 가정의 취업 실태 등 상황에 따라 그 범위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로 보육 이용시간을 설정한다. 맞춤형 보육기관 이용시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만 3세 이상의 유아로서 교육만 필요한 경우(1호 인정), 4시간의 교육표준시간 동안 보육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보육이 필요한 만 0~5세의 아동의 경우는 8시간의 보육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8시간의 ‘보육단시간’과 11시간의 ‘보육표준시간’으로 세분화되어진다. 즉 8시간의 ‘보육단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파트타임 취업으로 인정된 경우이며, 11시간의 ‘보육표준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풀타임 취업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맞춤형 보육기관의 이용시간은 보호자의 취업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표 3>에서 제시한 보육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일 12시간의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고, 보육의 필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정양육이 가능한 전업주부의 가구의 경우, 일일 6시간의 보육과 월 15시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⁹⁾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보호자의 근로시간(풀타임, 파트타임)에 따

8) 만 3세 이상의 유아로서 교육만 필요한 경우는 1호 인정, 만 3세 이상의 유아로서 교육과 보육이 모두 필요한 경우는 2호 인정, 만 3세 미만의 영아로서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3호 인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9) 긴급보육바우처: 맞춤반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때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른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의 차이는 없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가 취업 모의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점을 지니는 이유는 두 나라의 보육제도가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과 취업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개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혜진·손유진·전윤숙, 2015; 한정환, 2011).

그러나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보호자의 근로시간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따라, 각각 8시간과 11시간으로 세분화되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보호자의 근로시간(풀타임, 파트타임)에 대한 기준 없이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본의 경우, 영아의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 형성과 유아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보육기관 이용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취업모의 자녀의 경우, 보호자의 근로시간(풀타임, 파트타임) 상관없이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12시간의 보육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보육기관 이용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아기 긍정적 애착형성을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맞춤형 보육 이용절차

맞춤형 보육 제도의 이용절차를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표 3>에서 제시한 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기관과 보호자가 계약하는 공공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관과 보호자의 직접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맞춤형 보육기관의 이용절차는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교육표준시간 4시간을 이용하는 1호 인정¹⁰⁾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에 인정 신청을 하고 지급인정 및 지급인정증을 교부받을 필요 없이 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만 3세 이상의 유아로 보육과 교육이 모두 필요한 2호 인정의 경우나, 만 3세 미만의 영아로 보육이 필요한 3호 인정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에 보호자가 직접 인정 신청을 하고, 신청과 동시에 자격 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로 공무원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진 후, 지급인정 및 지급인정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의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맞춤반’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

10) 만 3세 이상의 유아로서 교육만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보육료 신청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종일반’의 경우에는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종일반 자격 신청을 같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용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맞춤반’의 경우, 읍면동 주민 센터에 보육료를 신청한 후 보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입소신청을 하여 기관의 원장과 보호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종일반’의 경우, 읍면동 주민 센터에 보육료 신청과 함께 종일반 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시군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후,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여 기관의 원장과 보호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과 한국 모두 보육이 필요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보육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두 나라 간 차이점이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맞춤형 보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서류와 함께 공무원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담당자와의 면담 없이 종일반 사유 확인서와 해당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개별 가구의 특수한 사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국가보조금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므로 공정한 기준으로 보육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관과의 계약 시, 일본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기관과 보호자가 계약하는 공공계약의 형태를 띤다.¹¹⁾ 반면 한국의 경우, 맞춤형 보육 실시주체가 다양함에 따라 기관과 보호자의 직접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5. 맞춤형 보육료 결정 및 지원정책

맞춤형 보육료 결정과 지원정책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보육료 결정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일본은 전체 보육료 지원 단가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관에 지원하며, 한국은 정부미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와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로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보육료 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보육료 결정은 보

11) 보육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2015년 4월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와 함께 인정 어린이원이 새로 통합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종전의 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 기관과 보호자가 계약하는 공공계약으로 변화하였다.

호자의 소득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용자 부담금’이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보육료 경감이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이나 가구의 상황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결정되며, ‘이용자 부담금’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보육료는 인정 구분 및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가가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정한다. 보육료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소득(시정촌 주민세 소득 비율 과세액 등)을 기초로 산출되며, 기관에 따라서 시정촌이 정하는 ‘이용자 부담금’(기본 보육료) 외에 실비 부담이나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교육·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추가 부담금(사전 설명·동의를 필요로 함)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금 이외의 보육비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혹은 저소득층 세대의 경우에는 보육료 결정에 있어 연령제한을 없애는 등 보육료 부담 경감조치가 확충된다. 한국의 경우, 보육료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시·도지사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기관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한다. 이때 보육료 결정은 영아(만 0~2세)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유아(만 3~5세)의 경우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가 다르게 결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원장이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추가보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한계비용 내에서 보호자가 기관에 직접 수납하며,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전체 보육료 지원 단가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관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육의 필요성을 평가한 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에서는 인정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합하여 ‘시설형 급부’ 제도를 설립하고, 시정촌의 확인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시설형 급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일본의 ‘시설형 급부’ 내용

구분	‘시설형 급부’ 내용
인정어린이원 (만 0~5세)	보호자는 기관에 ‘이용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은 대상 아동의 연령이나 3개의 인정구분,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지원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은 사립 유치원 (만 3~5세)	기관마다 정한 일률의 보육료를 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하면,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보호자에게 다시 지원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은 사립 보육소 (만 0~5세)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자는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은 보호자가 납부한 ‘이용자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기관에 지원

자료: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17).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 pp. 8, 53.

内閣府, 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2016).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 なるほど BOOK,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p.13.

〈표 4〉에서 보듯이, 일본의 ‘시설형 급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의 기본 구조는 내각총리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인 ‘공정 가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이 정하는 금액인 ‘이용자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원된다(「아동·육아지원법」27조, 29조 등).

한국의 경우, 보육료 지원은 정부미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와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로 나누어서 부모와 기관 모두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관에만 지원하는 일본과 차이점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로부터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보육료와 정부미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보육료 지원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의 보육료 지원 내용

구분	보육료 지원 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관 중 만 0~2세 영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기관에 지원되는 것으로, 기관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이용현황(출석일수)을 확정하고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기관이 신청한 기본보육료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승인 또는 반려함.
부모보육료	기관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이며,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지원 보육료가 해당 기관으로 지급됨.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p. 304, 366-369.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 공통된 재정지원체계인 '시설형 급부'를 설립하게 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재정지원 방법이 통합되었다. 이와 함께 보호자는 기관에 '이용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은 전체 보육료 지원 단가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인정어린이원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설립주체가 대부분 공립,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보육료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유아교육과 보육, 지역 육아지원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과 국가 및 지방의 영구재원 확보를 전제로 사회전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대기 아동의 해소를 위한 교육·보육의 장소를 확보하며,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교사의 처우개선, 단계적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살펴봤을 때, 일본의 경우,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보호자의 소득기준이나 보육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여 지원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본보육료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정부미지원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관에 지원을 하며, 부모보육료는 부모에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상환(시간 연장 보육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부모와 기관 모두에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무상보육제도에서 맞춤형 보육 제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을 보호자의 소득이나 가구의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인정어린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보육 실시기관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가기준과 설립주체 및 설립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5년 4월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의 시행으로 인가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지사로 상향되었다. 또한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고, 설립기준을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하여, 학교 및 아동복지기관으로서의 법적위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자격기준도 '유

치원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교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교사의 질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으로 인해 인정어린이원의 보육의 질이 향상되면서 기관의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만 0~3세 자녀를 둔 25~44세의 여성 취업자 수가 2016년 기준으로 17만 명이 증가하게 되어(首相官邸, n.d.) 여성 취업률도 2014년 70.8%에서 2020년 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厚生労働省, n.d.). 이는 한국형 맞춤형 보육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 선정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필요가구의 육아지원을 위해 보육의 필요성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장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영아의 경우, 일본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증가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며, 보육료의 경우에도 보호자의 소득기준이나 보육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선별적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맞춤형 보육 제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장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재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갑윤(2016)은 대안으로 모든 대상 영유아에게 공통된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른 추가보육시간은 부모가 선택하도록 하여 차등보육료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박선권(2016)도 모든 대상 영유아에게 동일한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른 추가보육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본보육은 국가가 재정을 확충하여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기하고, 추가보육에 대해서는 대상 가구가 근로하고 있는 기업이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보육시간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을 다양화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기관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8시간의 보육시간을 기본원칙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기관 이용시간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의 운영기준에 따라 12시간의 보육시간을 제공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이용시간의 차이는 없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인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종일반'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보육료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실제로 '종일반' 역시 8시간의 이용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기관의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원칙은 보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근무환경 악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¹²⁾에 대한 재정

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의 인권을 고려한 이용절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맞춤형 보육 제도는 이용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보육을 인정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만 3세 이상의 유아로서 교육과 보육이 모두 필요한 2호 인정의 경우나, 만 3세 미만의 영아로서 보육이 필요한 3호 인정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에 보호자가 인정 신청을 하면 신청과 동시에 자격 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로 공무원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도, 개별 가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공식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공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진석 외, 2016). 또한 구직 및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서류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다수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남인순·변재일, 2016). 따라서 보육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상에서 부모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맞춤형 보육료 결정 및 지원정책의 재원 확보에 있어 국가, 지방, 국민의 공동 책임에 기반을 둔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보육료 결정은 인정 구분 및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어, ‘이용자 부담금’이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보육료 경감이 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은 내각총리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인 ‘공정 가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이 정하는 금액인 ‘이용자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국가책임 하에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으로 만 0~5세 전 계층에게 보호자의 소득이나 가구의 상황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결정 및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보육정책 실시 후, 정부의 재정한계로 인해 수년 동안 보육료가 거의 동결되어(남인순·변재일, 2016), 기관의 운영환경과 교사의 처우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이는 직접적인 보육의 질 저하요인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

12) 이에 대해 이상민(2016)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12시간과 표준보육시간 8시간의 법규 개정으로 8시간 이후에는 시간 연장이 적용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갑윤(2016)은 기관의 운영시간과 교사의 근로시간과의 조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상 표준보육과정의 편성시간 설정과 ‘종일반’ 8시간, ‘맞춤반’ 6시간으로의 법규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비세율 인상과 국가 및 지방의 영구 재원 확보를 통해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정 확보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보육기관의 인가주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고, 설립기준을 유치원 기준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며, 보육교사 자격방식을 학점 단위에서 학과 단위로의 변경과 양성기관을 일반대학, 전문대학으로의 제한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대상 영유아에게 공통된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되, 개별적으로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보육이 필요할 경우, 추가시간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높이고,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경우처럼 8시간의 보육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보육시간 12시간 내에서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침해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대선공약으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어 국가책임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과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원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2016년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과 함께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2015년 대비 6% 인상 되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표준보육비용의 재측정이 필요한 실정이다(정갑윤, 2016).

참고문헌

- 강관혜(2008). 일본의 유보일원화 종합시설[인정어린이원]에 관한 동향과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2), 110-127.
- 경향신문(2017. 9. 27.) 종일반 허위자격 2만명...맞춤형보육 부작용 여실히 드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71717002에서 2018년 2월 23일 인출함.
- 국가통계포털(n.d.).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http://kosis.kr>에서 2017년 4월 13일 인출함.
- 국가통계포털(n.d.).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http://kosis.kr>에서 2017년 3월 21일 인출함.
- 국제신문(2013. 10. 20.) 어린이집 입소 밤샘 줄서기 사라진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1021.22009211049>에서 2018년 5월 7일 인출함.
- 김진석·김은정·안정인·최경숙·김호연·이경민(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월간 복지동향, 214, 53-58.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61322>
- 김혜진·손유진·전윤숙(2015). 일본의 유보통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일본근대학연구, 47, 339-354.
- 김효진(2017).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및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인순·변재일(2016).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6월 17일. 서울: 남인순의원실. pp. 1-74.
- 노성향(2014). 일본 유보통합과정이 우리나라 유보통합정책에 주는 시사점.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2), 97-109.
- 박사빈(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01, 95-115.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58943>
- 박선권(2016).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박은희(2015). 일본의 幼·保통합 추진 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육아지원 신제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1), 77-94.
- 법제처(n.d.). 영유아보육법. <http://www.moleg.go.kr>에서 2017년 3월 10일 인출함.
- 보건복지부(n.d.). 맞춤형 보육.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

- ENU_ID=06&MENU_ID=06400105&PAGE=5&topTitle=맞춤형 보육에서 2018년 5월 27일 인출함.
- 보건복지부(n.d.). 해외사례로 본 맞춤형 보육. <http://www.mohw.go.kr/react/policy/popup/childcare06.html>에서 2017년 2월 3일 인출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7. 10.). 맞춤형 보육 현장 정착을 위한 즉시 보완 조치 등 실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3379&SEARCHKEY=TITLE&SEARCHVALUE=맞춤형 보육에서 2018년 3월 12일 인출함.
-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발간자료(2017. 12. 28.).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3&page=4에서 2018년 5월 7일 인출함.
- 양미선(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육아정책포럼, 33, 6-17.
- 오경미(2017). 맞춤형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미희(2014). 한국과 일본의 유보통합화 과정 연구. 대한일어일문학회, 63(-), 261-280.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67583>
- 원석조(2010). 사회복지정책론(제3판). 경기: 공동체.
- 이규림(2017). 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육아정책연구, 11(2), 149-167.
- 이민희(2017).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민(2016). 맞춤형 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8시간) 법제화. 보육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4월 27일. 서울: 이상민의원실. pp. 1-64.
- 이성한(2014). 일본 유보통합의 흐름과 전망.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9(1), 33-54.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n.d.). 입소대기신청안내. <http://www.childcare.go.kr/>에서 2016년 12월 7일 인출함.
- 임효미(2017).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경희(2014). 일본의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 설비·운영 기준, 보육·교육내용 및 교사자격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391-412. <http://dx.doi.org/10.14698/jkcce.2014.10.6.391>

- 장진아(2017). 만0~2세 맞춤형 보육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갑윤(2016).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6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6월 9일. 서울: 정갑윤의원실. pp. 1-46.
- 하경표(2009). 일본의[인정어린이원]법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4(1), 55-72.
- 홍금자·정효정·이혜영(2015). 일본의 유보일원화 흐름과 「아동·육아 관련 3법」을 통한 한국 보육의 방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1(-), 91-116.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25875>
- 현정환(2011). 일본의 유·보 일원화 문제를 둘러싼 시대적 고찰과 최근의 동향 및 과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2), 41-63.
- KBS NEWS(2017. 4. 6.) 일본, 52개월째 경기 회복...한·일 경제력 격차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8998>에서 2018년 1월 5일 인출함.
- MBC NEWS(2017. 7. 4.) '맞춤형 보육' 도입 1년, 예산 늘었지만 만족도는...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57358_21408.html에서 2018년 2월 23일 인출함.
- 厚生労働省.(n.d.). 待機児童解消加速化プラン.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hoiku/index.html에서 2017년 4월 7일 인출함.
- 首相官邸.(n.d.). <http://www.kantei.go.jp/jp/headline/taikijido/>에서 2017년 4월 7일 인출함.
-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16. 4. 1.) 認定こども園に関する状況について.
-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16).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 平成28年4月.
-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2017).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 平成29年1月.
- 内閣府, 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2016).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 なるほど BOOK. 平成28年4月(改訂版). 東京, 日本: 内閣府 子ども・子育て本部.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11일 / 게재 승인 6월 12일
- 교신저자: 이화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hwado@cu.ac.kr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Custom-made Daycare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Minji Shin and Hwado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scuss issues on Korean custom-made day-care 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with authorized kindergartens in Japan. Comparisons were made on: operating organization, target children, using time, using process, expense decision, and supporting policy.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for Korean custom-made daycar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First, authorizing system should be re-arranged, considering the qualitative factors of the custom-made daycare system. Second, selecting system of the custom-made daycare children should be re-arranged. Third, various cases should be considered for decisions regarding the using time of the daycare facility. Fourth, systematic process for using process of the custom-made daycare system is necessary, considering various cases such as parents' human rights. Fifth, policies related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upporting policy and expense for the daycare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shared responsibility of people in Korea.

Key words: Korea and Japan, day-care system, custom-made day-care,
INJUNG Child-care Center, childcare center